

이슈리포트 제4호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세제

연구자 : 이 기 욱 (전문연구원)

2009. 9. .

한 국 세 무 사 회 부 설

한 국 조 세 연 구 소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세제

목 차	
제1편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납세유예	제3편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제도
제2편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납세유예	[부록]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 화에 관한 법률

제1편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납세유예

I. ‘상속세납세유예제도’의 내용과 적용 요건

1. 비상장주식 등¹⁾에 관련한 상속세납세유예제도의 적용 요건(조특법 제70조의7의2 제1항)

① 경영승계상속인²⁾이 비상장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 등³⁾을 취득하고, 그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 한다.

② 그 경영승계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중,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⁴⁾한 의결권주식 등⁵⁾에 관련한 과세가격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세

1) 조특법 제70조의7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주식에 관련한 회사의 주식 전부가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제2조 제16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것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출자 중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における經營の承繼の圓滑化に關する法律, 이하 경영승계원활화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 1)에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일정한 비상장회사(인정중소기업자)의 후계자를 말한다.

3) 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주식 등을 말한다.

4) 상속과 일정 친족에 대한 유증 외에 증여세납세유예제도를 적용한 생전증여를 포함한다.

5) ‘특례비상장주식 등’이라 하며, 상속개시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주식 등을 포함하

의 납세를 유예한다.

③ 경영승계상속인은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유효기간(5년) 내에는 매년, 그리고 그 후에는 3년마다 ‘계속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⁶⁾

2. 유예세액의 계산

1) 유예세액의 계산방법

① ‘상속세납세유예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통상적인 상속세액의 계산’을 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출한다.⁷⁾

② 경영승계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취득재산은 불변인 것으로 하고, 경영승계상속인이 특례적용주식 등⁸⁾(100%)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액과 특례적용주식 등(20%)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액의 차액을 경영승계상속인의 ‘유예세액’으로 한다.⁹⁾

③ 또한, ①에 의하여 산출한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액에서 유예세액을 공제한 액이 경영승계상속인의 납부세액이 된다.

여, 그 회사의 발행의결권주식 등의 총수 등의 3분의 2에 달하는 부분에 한한다. 경영승계상속인은 보통 역년(歷年)과세에 의한 수증,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적용에 의한 수증, 경영승계상속인의 자기자금출자에 의한 취득, 그리고 증여세납세유예제도의 적용에 의한 수증 등에 의하여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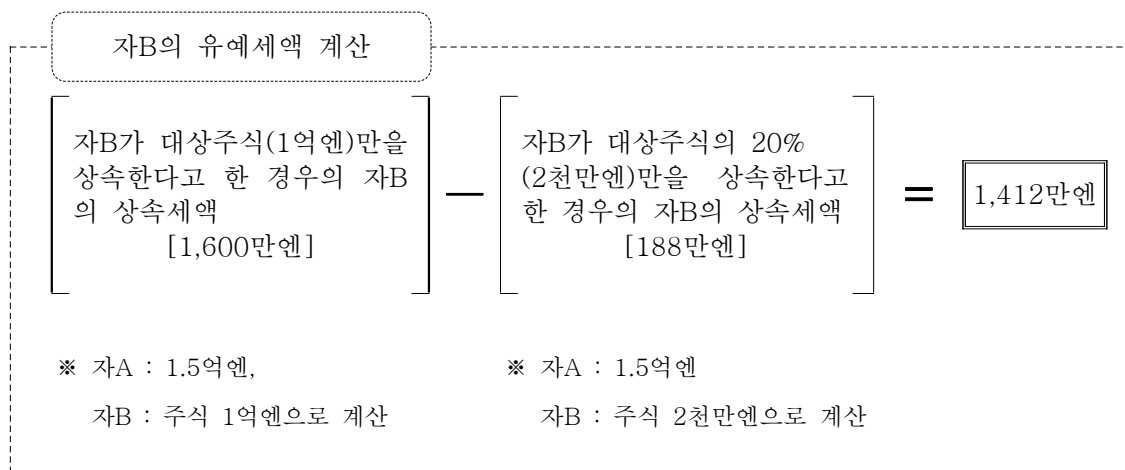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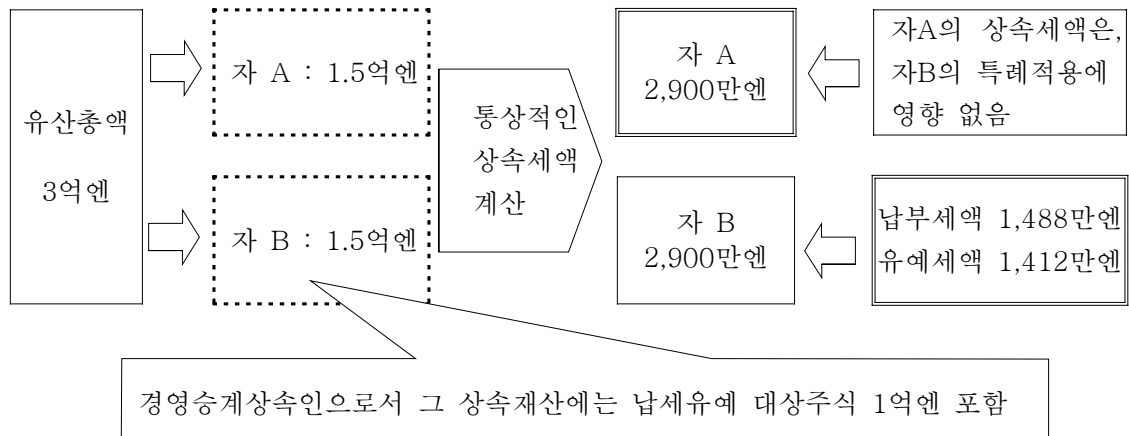
6) 신고서제출기한이 되는 보고기준일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영승계기간 중에는 제1종기준일, 그 이후는 제2종기준일이라 한다.

7) 이 때 산출된 액이 경영승계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상속세액이 된다.

8) 이하 ‘특례적용주식등’이라 한다.

9) 납세유예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만을 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세액에서 그 주식 등의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주식 등만을 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유예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승계자공제방식’은 ‘유산취득과세방식’의 도입이 보류되면서 그 대안으로 채택된 ‘법정상속분과세방식의 변형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도표-1] 새로운 사업승계세제의 개요



(출처) 중소기업청, 재무성 자료 가공

2) 상속세납세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유예세액 계산례

경영승계상속인이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납세유예의 대상이 되는 세액은 통상의 과세가격에 의한 특례적용주식등만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세액으로부터 과세가액을 20%로 감액한 특례적용주식등만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세액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1) 유예세액의 계산

다음 ②의 제2단계에서 계산된 차액이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유예세액(계산례의 1,412만엔)이 되고, 그 결과 다음 ①의 제1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으로부터 ②의 제2단계에서 계산된 차액(유예세액)을 공제한 금액(계산례의 1,488만엔)이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된다.

① 제1단계 계산

상속세납세유예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통상의 상속세액의 계산을 행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출한다(경영승계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상속세액은 이 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된다).

또한, [도표-2]의 「통상의 상속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현행 규정과 동일한 계산).

「통상의 상속세액의 계산」

〈과세유산액〉

$$3\text{억엔} - (5,000\text{만엔} + 1,000\text{만엔} \times 2\text{인}) = 2\text{억}3,000\text{만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2\text{억}3\text{천만엔} \div 2 = 1\text{억}1,5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가(假)상속세액〉

$$\cdot \text{자A} : 1\text{억}1,500\text{만엔} \times 40\% - 1,700\text{만엔} = 2,900\text{만엔}$$

$$\cdot \text{자B} : 1\text{억}1,500\text{만엔} \times 40\% - 1,700\text{만엔} = 2,900\text{만엔}$$

〈상속세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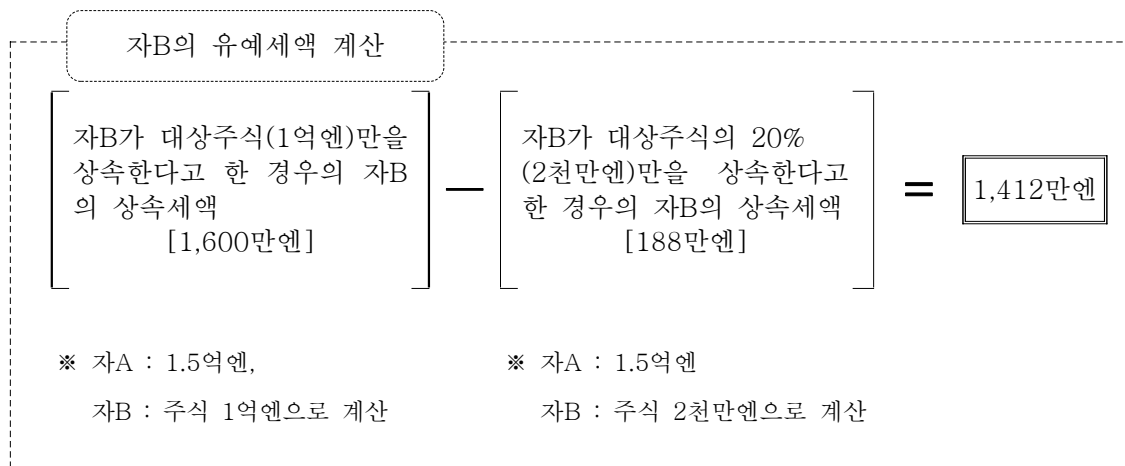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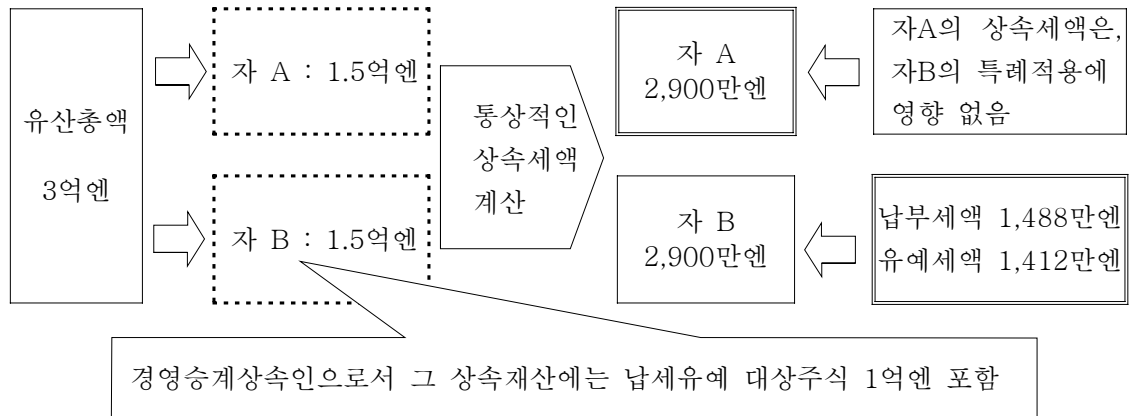
$$2,900\text{만엔} \times 2\text{인} = 5,8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

$$\cdot \text{자A} : 5,800\text{만엔} \times 1\text{억}5,000\text{만엔} / 3\text{억엔} = 2,900\text{만엔}$$

$$\cdot \text{자B} : 5,800\text{만엔} \times 1\text{억}1,500\text{만엔} / 3\text{억엔} = 2,900\text{만엔} \dots \textcircled{1}$$

[도표-2] 특례적용주식등이 1억엔인 경우의 계산례



(출처) 중소기업청, 재무성 자료 가공

② 제2단계 계산

경영승계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취득재산은 불변으로 한 다음, 경영승계상속인이 통상의 과세가격에 의한 특례적용주식등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액과, 과세가격을 20%로 감액한 특례적용주식등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경영승계상속인의 상속세액의 차액이 경영승계상속인의 유예세액이 된다.

「자B가 통상의 과세가격에 의한 특례적용주식등(1억엔)만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세액」
〈과세유산액〉

$$\{1\text{억}5,000\text{만엔(자A)} + 1\text{억엔(자B)}\} - 7,000\text{만엔} = 1\text{억}8,000\text{만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1\text{억}8\text{천만엔} \div 2 = 9,0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가(假)상속세액〉

$$\cdot \text{자A} : 9,000\text{만엔} \times 30\% - 700\text{만엔} = 2,000\text{만엔}$$

$$\cdot \text{자B} : 9,000\text{만엔} \times 30\% - 700\text{만엔} = 2,000\text{만엔}$$

〈상속세의 총액〉

$$2,000\text{만엔} \times 2\text{인} = 4,000\text{만엔}$$

〈자B의 상속세액〉

$$\cdot \text{자B} : 4,000\text{만엔} \times 1\text{억엔} / 2.5\text{억엔} = 1,600\text{만엔} \dots \textcircled{2}$$

「자B가 과세가격을 20%로 감액한 특례적용주식등만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세액」
〈과세유산액〉

$$\{1\text{억}5,000\text{만엔(자A)} + 2,000\text{만엔(자B)}\} - 7,000\text{만엔} = 1\text{억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1\text{억엔} \div 2 = 5,0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가(假)상속세액〉

$$\cdot \text{자A} : 5,000\text{만엔} \times 20\% - 200\text{만엔} = 800\text{만엔}$$

$$\cdot \text{자B} : 5,000\text{만엔} \times 20\% - 200\text{만엔} = 800\text{만엔}$$

〈상속세의 총액〉

$$800\text{만엔} \times 2\text{인} = 1,600\text{만엔}$$

〈자B의 상속세액〉

$$\text{자B} : 1,600\text{만엔} \times 2,000\text{만엔} / 1.7\text{억엔} \approx 188\text{만엔}$$

〈자B의 유예세액〉

$$1,600\text{만엔}(\textcircled{2}) - 188\text{만엔} = 1,412\text{만엔} \dots \textcircled{3}$$

〈자B의 납부세액〉

$$2,900\text{만엔}(\textcircled{1}) - 1,412\text{만엔}(\textcircled{3}) = 1,488\text{만엔} \dots \textcircled{4}$$

(2) 1억엔의 특례적용주식등이 3분의 2로 제한되는 경우의 유예세액 계산

상술한 (1)의 1억엔의 주식등 가운데 3분의 2(6,600만엔)가 특례적용 대상주식등으로서 유예세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과 비교하여 유예세액이 대폭 감소한다(1,412만엔 → 792만엔).

① 제1단계 계산

상기의 1)①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통상의 상속세액의 계산」

〈과세유산액〉

$$3\text{억엔} - (5,000\text{만엔} + 1,000\text{만엔} \times 2\text{인}) = 2\text{억}3,000\text{만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2\text{억}3\text{천만엔} \div 2 = 1\text{억}1,5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가(假)상속세액〉

$$\cdot \text{자A} : 1\text{억}1,500\text{만엔} \times 40\% - 1,700\text{만엔} = 2,900\text{만엔}$$

$$\cdot \text{자B} : 1\text{억}1,500\text{만엔} \times 40\% - 1,700\text{만엔} = 2,900\text{만엔}$$

〈상속세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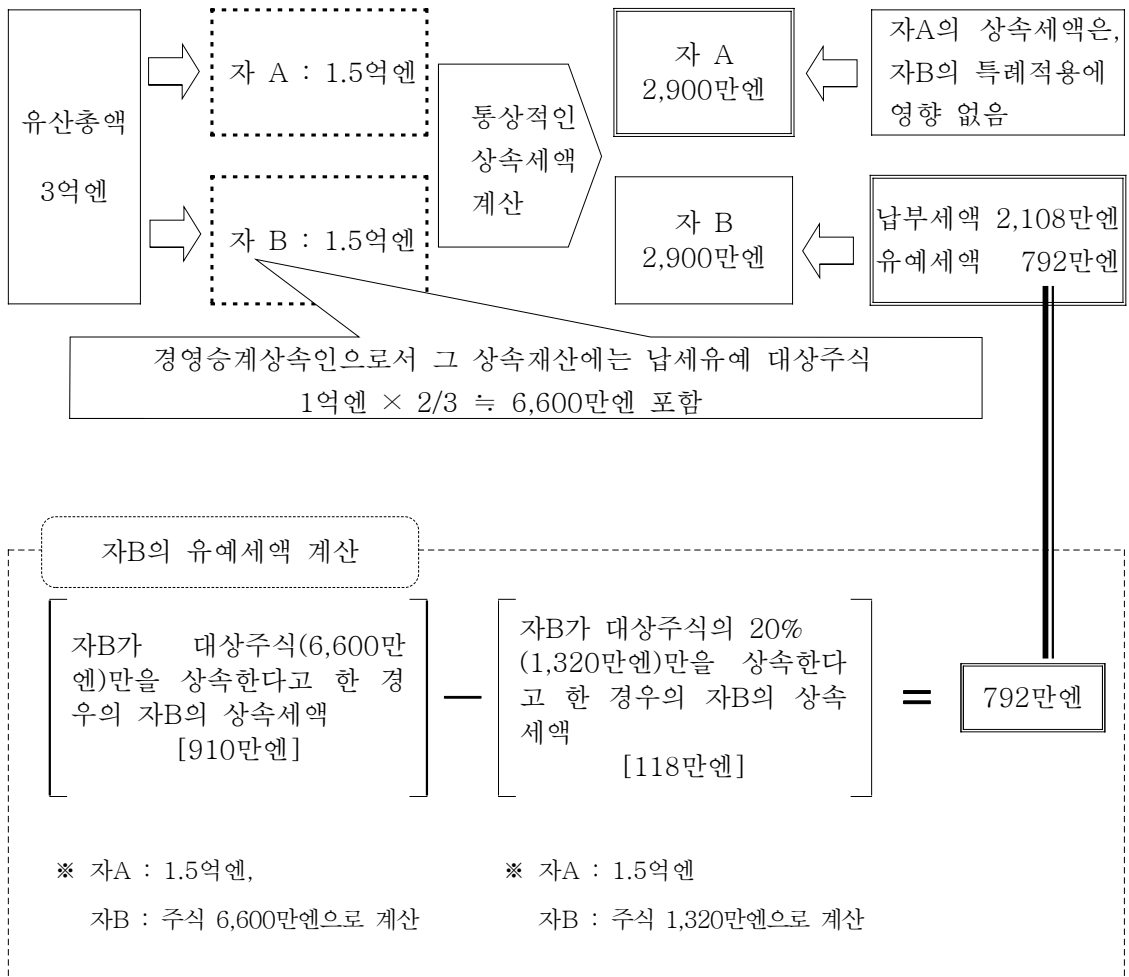
$$2,900\text{만엔} \times 2\text{인} = 5,8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

$$\cdot \text{자A} : 5,800\text{만엔} \times 1\text{억}5,000\text{만엔} / 3\text{억엔} = 2,900\text{만엔}$$

$$\cdot \text{자B} : 5,800\text{만엔} \times 1\text{억}1,500\text{만엔} / 3\text{억엔} = 2,900\text{만엔} \dots \textcircled{1}$$

[도표-3] 특례적용주식등이 1억엔의 3분의 2(6,600만엔으로 한다)로 제한되는 경우의 계산례



(출처) 중소기업청, 재무성 자료 가공

② 제2단계 계산

경영상속승계인 이외의 상속인의 취득재산은 불변으로 한 다음, 경영상속승계인이 통상의 과세가격에 의한 특례적용주식 등(1억엔 $\times$ 2/3 $\doteq$ 6,600만엔)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경영상속승계인의 상속세액과, 과세가격을 20%로 감액한 특례적용주식등(6,600만엔 $\times$ 20% = 1,320만엔)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경영상속승계인의 상속세액의 차액이 경영상속승계인의 상속세 유예세액이 된다.

「자B가 통상의 과세가격에 의한 특례적용주식등(6,600만엔)만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세액」
〈과세유산액〉

$$\{1\text{억}5,000\text{만엔(자A)} + 6,600\text{만엔(자B)}\} - 7,000\text{만엔} = 1\text{억}4,600\text{만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1\text{억}4,600\text{만엔} \div 2 = 7,300\text{만엔}$$

〈각 상속인의 가(假)상속세액〉

$$\cdot \text{자A} : 7,300\text{만엔} \times 30\% - 700\text{만엔} = 1,490\text{만엔}$$

$$\cdot \text{자B} : 7,300\text{만엔} \times 30\% - 700\text{만엔} = 1,490\text{만엔}$$

〈상속세의 총액〉

$$1,490\text{만엔} \times 2\text{인} = 2,980\text{만엔}$$

〈자B의 상속세액〉

$$\cdot \text{자B} : 2,980\text{만엔} \times 6,600\text{만엔} / 2.16\text{억엔} \doteq 910\text{만엔} \dots \textcircled{2}$$

3. 유예세액의 면제

1) 경제산업대신 인정의 유효기간(5년) 경과 후의 납세유예액 면제(조특법 제70조의7의2 제15항)

그 경영승계상속인이 특례적용주식등을 사망시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는 납세유예액의 면제가 면제된다.

「자B가 과세가격을 20%로 감액한 특례적용주식등(1,320만엔)만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세액」
〈과세유산액〉
$\{1\text{억}5,000\text{만엔(자A)} + 1,320\text{만엔(자B)}\} - 7,000\text{만엔} = 9,320\text{만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9,320\text{만엔} \div 2 = 4,660\text{만엔}$
〈각 상속인의 가(假)상속세액〉
· 자A : $4,660\text{만엔} \times 20\% - 200\text{만엔} = 732\text{만엔}$
· 자B : $4,660\text{만엔} \times 20\% - 200\text{만엔} = 732\text{만엔}$
〈상속세의 총액〉
$732\text{만엔} \times 2\text{인} = 1,464\text{만엔}$
〈자B의 상속세액〉
자B : $1,464\text{만엔} \times 1,320\text{만엔} / 1.632\text{억엔} \approx 118\text{만엔}$
〈자B의 유예세액〉
$910\text{만엔(②)} - 118\text{만엔} = 792\text{만엔} \dots \text{③}$
〈자B의 납부세액〉
$2,900\text{만엔(①)} - 792\text{만엔(③)} = 2,108\text{만엔} \dots \text{④}$

2) 경제산업대신 인정의 유효기간(5년) 경과 후에 있어서의 유예세액 납부의 면제요건(조특법 제70조의7의2 제17항)

① 특례적용주식등에 관련한 회사에 대하여 파산개시의 결정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② 다음 후계자에 대하여 특례적용주식등을 증여한 경우, 그 특례적용주식등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은 때는 그 적용을 받는 특례적용주식등에 관련한 상속세 유예세액을 면제한다(2차승계상당분 면제)

③ 동족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보유하는 특례적용주식등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가 또는 양도시의 시가 중 높은 액이 유예세액을 하회하는 때는 그 차액분의 유예세액을 면제한다.

3)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조특법 제70조의7의2 제17항 제1·3호)

상기 2)①, ③의 경우에 면제하는 것으로 한 것 중 과거 5년간(사업연도) 경영승계상속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 및 과대임원급여 등에 상당하는 액’¹⁰⁾은 면제하지 않는다.

4. 유예세액의 납부

1) 경영승계기간(5년간) 내의 요건흡결(조특법 제70조의7의2 제3항)

경제산업대신 인정의 유효기간(5년간) 내에 경영승계상속인이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는 등 인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액을 납부한다.

2)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의 특례적용주식등의 양도 등(조특법 제70조의7의2 제5항)

인정의 유효기간(5년간) 경과 후에 특례적용주식등의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 등의 비율에 따라서 유예세액을 납부한다.

II. 경영승계원활화법상 ‘상속세납세유예제도의 적용요건’

1. 계획적인 승계에 관련한 대책

1) 경제산업대신의 확인

계획적인 승계에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하의 경우에는 대신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① 시행 직후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10) 과대임원급여란 법인세법 제34조(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제36조(과대한 사용인급여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② 피상속인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선대경영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합하면, 후계자가 발행의결권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2) 계획적인 승계에 관련한 대책

후계자의 확정, 주식의 계획적 승계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2. 선대경영자(피상속인)의 요건

① 회사의 대표자였을 것

② 선대경영자와 동족관계자가 발행의결권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동족 내(경영승계상속인을 제외한다)에서 최대주주일 것(도표-5, 참고자료 ①).

3. 후계자(상속인)의 요건

① 회사의 대표자일 것

② 선대경영자(피상속인)의 친족일 것

③ 선대경영자와 동족관계자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동시에 동족 내(경영승계상속인을 제외한다)에서 최대주주일 것

④ 1개 회사에 1인 적용

4. 인정대상(승계)회사의 요건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일 것

② 비상장회사일 것

③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5. 사업계속 요건

- ① 대표자일 것
- ② 고용의 8할 이상을 유지할 것
- ③ 상속한 대상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
- ④ 인정대상(승계)회사일 것(조직재편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 계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는 인정이 계속된다)
- ⑤ 기타 : 경영승계상속인의 폐업 등
- ⑥ 사업계속기간의 요건 충족에 관한 신고 등 필요

제2편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세납세유예

I. 제도의 개요

후계자가 인정증여승계회사(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친족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전부(증여 전부터 이미 후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여, 발행의결권주식 등의 총수 등의 3분의 2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상한으로 한다. 이하 ‘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대상주식 등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전액의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납세유예제도는 2009년 4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 적용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동법 부칙 제63조 제1항).

II. 납세유예분 증여세액의 계산 · 신고 · 신고서의 제출 · 담보의 제공

1. 납세유예분 증여세액의 계산

특례수증비상장주식(증여시 인정증여승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의 부분으로서 일정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을 경영승계수증자에 관한 당해 연도분의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증여세신고서의 제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신고서에 비상장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의 기재를 하고, 비상장주식 등의 명세, 납세유예분인 증여세액 계산에 관한 명세서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9항).

3. 신고서의 제출

이 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영승계수증자는 경영증여보고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그 신고기한까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10항).

4. 담보의 제공

인정증여승계회사에 관한 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을 담보로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주권)을 법무국에 공탁하고, 공탁서 정본을 제출하는 등 국세통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지분회사인 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을 담보로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을 담보로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서류 등 소정

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1항, 조특법시행령 제40조의8 제3항).

또한, 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의 전부를 담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납세유예분의 증여세액에 달하지 않는 때에도 납세유예분의 증여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7항).

Ⅲ. 유예세액의 면제

1. 신고에 의한 면제

경영승계수증자가 다음의 하나인 경우에는 유예세액의 납부를 면제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16항).

- ① 증여자보다 먼저 경영승계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동일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면제(조특법 제70조의7 제17항)

경영증여승계기간 말일의 익일 이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신청증여세액이 면제된다.

- ① 경영승계수증자가 비상장주식 등(특례수증비상장주식 등에 관련한 인정증여승계회사에 관련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특례수증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에, 이 주식에 관련한 회사로부터 경영승계수증자 등이 수령한 잉여금 등을 가산한 합계액이 양도 직전의 유예증여세액에 미달하는 때
- ②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인정증여승계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의 효력

이 발생하기 직전의 특례수증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이 주식에 관련한 회사로부터 경영승계수증자 등이 수령한 잉여금 등을 가산한 합계액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유예중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주식교환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교환 완전자회사 등이 된 경우로서, 주식교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특례수증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이 주식에 관련한 회사로부터 경영승계수증자 등이 수령한 잉여금 등을 가산한 합계액이 주식교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유예중세액에 미달하는 때

IV. 유예세액의 납부

유예세액의 납부는 경영승계수증자 또는 인정증여승계회사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유예에 관련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에 관하여는 경영증여승계기간(증여세신고서의 제출기한 익일로부터 동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 또는 증여자 사망일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에서의 것과, 이 기간의 말일 익일로부터의 것이 있다.

또한, 납부에 있어서는 이자세도 함께 납부할 필요가 있다.

1. 경영증여승계기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4항).

- ① 경영승계수증자가 대표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 ② 제1종증여기준일에 상시사용종업원의 수가 증여시의 상시사용종업원수의 80% 미만인 경우
- ③ 경영승계수증자가 그 동족관계자와 합하여 보유하는 의결권수가 50% 이하가 된 경우
- ④ 경영승계수증자가 동족관계자 내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 ⑤ 경영승계수증자가 당해 특례비상장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
- ⑥ 경영승계수증자가 당해 특례비상장주식 등의 전부를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인정증여승계회사가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등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 ⑦ 인정승계회사가 회사분할을 한 경우(흡수분할승계회사 등의 주식 등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잉여금배당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인정증여승계회사 등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⑧ 인정증여승계회사가 해산을 한 경우(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회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⑨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자산보유형회사 또는 자산운용형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⑩ 인정증여승계회사의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 된 경우
- ⑪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자본금의 액의 감소를 한 경우 또는 준비금의 액을 감소한 경우
- ⑫ 경영승계수증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뜻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⑬ 인정증여승계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적격합병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⑭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등이 된 경우(적격교환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⑮ 인정증여승계회사의 주식 등이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⑯ 인정증여승계회사 또는 특별관계 있는 회사가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⑰ 인정증여승계회사의 원활한 사업운영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조특법 제70조의7 제4항 제17호)

2. 경영증여승계기간(5년) 경과 후

경영증여승계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유예증증여세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전부에 관하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전술한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영승계수증자가 담보에 관하여 국세통칙법 제51조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경영승계수증자로부터 제출된 전술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상위하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 부당감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한 납세유예에 관한 기간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예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0조의7 제6항).

1) 유예세액 전액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① 경영승계수증자가 당해 특례비상장주식 등의 전부를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인정증여승계회사가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등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인정증여승계회사가 해산을 한 경우(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회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③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자산보유형회사 또는 자산운용형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인정증여승계회사의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 된 경우

⑤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자본금의 액의 감소를 한 경우 또는 준비금의 액을 감소한 경우

⑥ 경영승계수증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뜻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특례적용주식 등의 총수에 대한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특례적용주식 등의 비율에 따른 유예세액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 ① 경영승계수증자가 당해 특별비상장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
- ② 인정증여승계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 ③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등이 된 경우
- ④ 인정승계회사가 회사분할을 한 경우(흡수분할승계회사 등의 주식 등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잉여금배당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⑤ 인정증여승계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인정증여승계회사 등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이자세의 납부

유예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법정신고 기한부터의 이자세(연 3.6%)를 함께 납부한다(조특법 제70조의7).

다만, 일본은행이 정하는 기준할인율에 4%를 가산한 금액이 7.3%에 미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 된다(0.1% 미만의 단수절사)(조특법 제93조 제1항, 제4항).

[산식]

$$3.6\% \times (\text{일본은행이 정하는 기준할인율} + 4) / 7.3\%$$

V.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조특법 제70조의7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경영승계수증자에 관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증여자가 사망한 데 다른 상속세에 관하여는 경영승계수증자가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특별수증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에 산입할 특별수증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증여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게 된다(조특법 제70조의7의3).

제3편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세와 상속가산제도

2009년 3월 1일부터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경영승계법상 비상장주식 등 평가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이, 그리고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 ‘유류분산정에 관련한 합의허가신청서’ 기재요령이 공표되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선대경영자로부터 추정상속인인 후계자가 자사주식의 증여를 받는 경우,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시에 상속세로 정산을 행하는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상속세 계산을 행함에 있어 증여재산 과세가격은 증여시의 시가로 되어 있다. 또한, 2009년도 세제개정에 의하여 창설되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한 증여세납세유예제도”에서는 증여시에 증여세 납세를 유예하고 증여자 사망시에 당해 증여세를 면제한 다음, 대상 주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계산을 행하는데, 그 대의 과세가격은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시의 시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와 증여세납세유예제도는 어디까지나 상속세의 계산상 평가시점을 증여시로 고정하는 것으로서, 선대경영자의 상속인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유류분제도의 특례인 고정합의와는 취지·목적이 다른 제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때의 생전증여의 취급에 관련한 것이며, 생전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때의 상속세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에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 계산을 행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 생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상 가산되어 계산되는 규정들, 즉 상속세법 제19조(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가 있는 경우의 상속세), 동법 제21조의15(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시정산과세적용자), 동법 제21조의16(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속시정산과세적용자), 구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5(특정사업용자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동법 제70조의3의3(특정증여자로부터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를 받은 경우의 상속시정산과세의 특례), 동법 제70조의3의4(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를 받은 경우의 상속시정산과세에 관련한 증여세 특별공제의 특례) 등 각 제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I.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가 있는 경우의 상속세(상속세법 제19조)

증여세 과세제도에는 역년과세제도와 상속시정산과세제도가 있으며, 역년과세제도라 함은 1년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에 관련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격에 가산(가산액은 증여시의 가액이다)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격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가 되는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째의 대응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의 증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역년과세제도는 대응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으로 보지 않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액을 당사자의 상속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공제하는 증여세액이 당사자의 상속세를 초과하여도 납부한 증여세의 환부는 없다).

II. 상속시정산과세제도

상속시정산과세제도는 특정증여자(증여한 해의 1월 1일에 65세 이상

인 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시정산과세에 관련한 증여세 세율(20%)을 곱한 증여세를 미리 지급하고, 그 특정증여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한 때에 그 증여재산과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합계한 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상속세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증자는 특정증여자의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으로서 증여가 있는 해의 1월 1일에 20세 이상인 자이다.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시정산과세적용자는, 특정증여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제도의 대상이 된 수증재산의 증여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격으로 하고, 또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속시정산과세적용자에 대해서도, 특정증여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Ⅲ. 구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5와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 납세유예

특정사업용자산상속인 등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하여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서 및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련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선택을 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상속세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계속 선택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격에 산입할 가액은 선택을 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의 가액에 9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구특조법 제69조의5 제1항).

이 규정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2009년 4월 1일 이후 폐지되었는데, 특정사업용자산상속인 등이 시행일 전(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서 및 소정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련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하여 구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5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특조법 부칙 제64조 제1항).

또한, 특정사업용자산상속인 등이 시행일 전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서 및 구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5 제10항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특정증여자가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특정증여자에 관련한 특정사업용자산상속인 등이 ① 임원요건, ② 서류제출요건, ③ 주식보유요건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정사업용자산상속인 등은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을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으로 보아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2의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부칙 제64조 제2항).

결과적으로 특정수증동족회사주식 등에 관하여는 구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5이든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2이든 어느 것이나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IV. 구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3의3, 제70조의3의4와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납세유예

이 제도는 특정수증자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그 해 1월 1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특정동족주식 등을 취득하고, 또한 그 해 12월 31일 당해 특정동족주식 등에 관련한 특정동족법인의 임원 기타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확인일 익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서를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때는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구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3의4는 특정수증자(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증여에 의하여 특정동족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해에 당해 특정수증자의 당해 특정동족주식 등을 증여한 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에 관련한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500만엔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① 동족주식등증여자에 관련한 상속세법 제21조의9 제5항에 규정하는 상속시정산과세적용자

② 동족주식등증여자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동족주식 등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21조의9 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한편, 이 규정들은 그 적용기한(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로 한정되어 있었다)의 연장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를 행한 자의 경우, 2010년 3월 31일까지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정승계회사의 임원 등일 것,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 상기 구법의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상기 신고에 관련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 두 가지 점이다.

① 특정수증자가 자기와 관련한 특정동족주식등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위에서 선택한 특정동족주식 등에 관련한 회사의 것으로 한정된다)에 관하여는, 당해 선택특정동족주식 등에 관하여 위에서 서술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개정 전의 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4는 동법 제70조의3의3 및 동법 제70조의3의4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개정법 부칙에서도 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

4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조정한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점.

V.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제도

경영승계원활화법에서 규정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서는 ① 민법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특별수익이 되는 생전증여에 관하여는 모두 가산하고 있는 점, ② 민법상 과거의 증여재산 평가를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로 행하는 점 등이 비상장주식의 사업승계에 대한 장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①의 경우에는, ‘당해 후계자가 당해 구대표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당해 증여를 받은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가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으로 하는 제외합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②의 경우에는, ‘전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할 가액을 당해 합의시의 가액(중략)으로 할 것’(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하는 고정합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세제개정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이번 개정은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취지에 따른 증여·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예한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직접 대응한 세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록]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經營の承繼の圓滑化に關する法律)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제2장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제3조 - 제11조)

제3장 지원조치 (제12조 - 제15조)

제4장 잡칙 (제16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특색 있는 사업활동을 행하고,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표자의 사망 등에 기인하는 경영승계가 그 사업활동의 계속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유류분에 관해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의 특례를 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 공급의 원활화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경영 승계 원활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계속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에 계기하는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자
2.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자

3.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자
4.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다음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자
5.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그 업종별로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그 업종별로 정령에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그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자

제2장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제3조 (정의) ① 이 장에서 ‘특례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자 중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상품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16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동법 제67조의11 제1항의 점두매매유가증권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이 장에서 ‘구대표자’라 함은 특례중소기업자의 대표자였던 자(대표자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가운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이들의 자 이외의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중 적어도 1인에 대하여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주식(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여를 한 자를 말한다.

③ 이 장에서 ‘후계자’라 함은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 중, 당해 구대표자로부터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의 증여를 받은 자 또는 당해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주식 등을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로서,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총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또한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대표자인 자를 말한다.

제4조 (후계자가 취득한 주식 등에 관한 유류분의 산정에 관한 합의 등) ①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은 그 중 1인이 후계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써 서면에 의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내용의 정함을 할 수 있다. 단, 당해 후계자가 소유하는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 가운데 당해 정함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에 관한 의결권의 수가 총주주 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가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당해 후계자가 당해 구대표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당해 증여를 받은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가액을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
2. 전 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할 가액을 당해 합의하는 때의 가액(변호사, 변호사법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1948년 법률 제103호) 제16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감사법인,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그 때의 상당한 가액으로서 증명을 한 것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

② 다음에 제기하는 자는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증명을 할 수 없다.

1. 구대표자
2. 후계자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인, 감사법인 또는 세리사법인으로서, 그 사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제기하는 자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는 때에, 이와 함께 그 전원의 합의로써 서면에 의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경우에 후계자 이외의 추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정함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후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의 대상으로 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구대표자의 생존 중에 당해 후계자가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대표자로서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제5조 (후계자가 취득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의 산정에 관한 합의 등)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는 때에, 이와 함께 그 전원의 합의로써 서면에 의하여 후계자가 당해 구대표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당해 증여를 받은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가액을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의 정함을 할 수 있다.

제6조 ①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는 때에, 이와 함께 그 전원의 합의로써 당해 추정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정함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은 전항에 의한 합의로서 후계자 이외의 추정상속인이 당해 구대표자로부터 증여 또는 당해 증여를 받은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가액을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의 정함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제산업대신의 확인)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전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계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합의가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2. 신청을 한 자가 당해 합의를 한 날에 후계자였던 사실.
3. 당해 합의를 한 날에 당해 후계자가 소유하는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주식 등 중 당해 합의의 대상으로 한 주식 등을 제외한 것에 관한 의결권의 수가 총주주 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100분의 50 이하의 수였던 사실.

② 전항의 확인의 신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에 제기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으로서 하여야 한다.

1. 당해 합의의 당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다음에 제기하는

서면

가. 당해 합의에 관한 서면

나. 당해 합의의 당사자 전원이 당해 특례중소기업자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합의를 하였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서면

2.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제기하는 내용의 정함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호에 규정하는 증명을 기재한 서면

3. 전2호에 제기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한 후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확인을 받을 수 없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에 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은 것이 판명된 때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가정재판소의 허가)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5조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4조 제1항 및 제5조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는 전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당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 신청에 의하여,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가정재판소는 전항에 규정하는 합의가 당사자 전원의 진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심증을 얻지 못하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③ 전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9조 (합의의 효력) ① 전조 제1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29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104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90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제기하는 내용의 정함에 관한 주식 등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에 관한 재산가액을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전조 제1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의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제기하는 내용의 정함에 관한 주식 등에 관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산입할 가액은, 당해 정함을 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합의는 구대표자가 한 유증 및 증여에 관하여 당해 합의의 당사자(민법 제887조 제2항(동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대표자의 상속인이 되는 자(다음 조 제4호에서 ‘대습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3호에서 같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하는 감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합의의 효력의 소멸)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합의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제7조 제1항의 확인이 취소된 것
2. 구대표자의 생존 중에 후계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견개시 또는 보좌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
3. 당해 합의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새로이 구대표자의 추정상속인이 된 것
4. 당해 합의의 당사자의 대습자가 구대표자의 양자가 된 것

제11조 (가사심판법의 적용) 제8조 제1항의 허가는 가사심판법(1947년 법률 제152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 제1항 갑류에 계기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3장 지원조치

제12조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①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자는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회사인 중소기업자(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6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동법 제67조의11 제1항의 점두매매유가증권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 당해 중소기업자의 대표자의 사망 등에 기인하는 경영승계에 따라, 사망한 그 대표자(대표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퇴임한 그 대표자의 자산 중 당해 중소기업자의 사업 실시에 불가결한 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실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의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 : 다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망 등에 기인하는 당해 다른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경영승계에 따라, 당해 다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자산 중 당해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 실시에 불

가결한 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실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의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② 전항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중소기업신용보험법(1950년 법률 제 264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통보험, 동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무담보보험 또는 동법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소액보험의 보험관계로서, 경영승계관련보증(동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으로서,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인정중소기업자’라 한다.)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것을 말한다.)을 받은 인정중소기업자에 관한 것에 대한 다음 표의 상란에 제기하는 동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들 규정 중 같은 표의 중란에 제기하는 자구는 같은 표의 하란에 제기하는 자구로 한다.

제3조 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하는 경영승계관련보증(이하 ‘경영승계관련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 합계액과 기타 보험관계의 보험가액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 제1항 및 제3조의3 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경영승계관련보증에 관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 합계액과 기타 보험관계의 보험가액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 제3항	당해 차입금의 액 중	경영승계관련보증 및 기타 보증 별로, 각각 당해 차입금의 액 중
	당해 채무자	경영승계관련보증 및 기타 보증 별로, 당해 채무자
제3조의3 제2항	당해 보증을 한	경영승계관련보증 및 기타 보증 별로, 각각 당해 보증을 한
	당해 채무자	경영승계관련보증 및 기타 보증 별로, 당해 채무자

제14조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특례) ①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 또는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는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2007년 법률 제57호) 제11조 또는 오키나와진흥개발

금융공고법(1972년 법률 제31호)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정중소기업자(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제기하는 중소기업자에 한한다.)의 대표자에 대하여, 당해 대표자가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채무로서 당해 인정중소기업자의 사업 실시에 불가결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관한 것의 변제자금 기타 당해 대표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서 당해 인정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의 계속에 필요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 중 별표의 상란에 제기하는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상란에 제기하는 자금의 대부는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각각 같은 표의 하란에 제기하는 업무로 본다.

제15조 (지도 및 조언)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대표자의 사망 등에 기인하는 경영의 승계에 따라, 종업원수의 감소를 수반하는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신용상태의 저하 등에 의하여 당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의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전개, 인재육성 및 자금확보에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고 적절한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잡 칙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 조치) 정부는 2008년도 중에 중소기업에서의

대표자의 사망 등에 기인하는 경영승계에 따라 그 사업활동의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검토)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이 법률 시행 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소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별 표

1. 소액 자금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 별표 제1 제1호의 하란에 제기하는 자금대부업무 또는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 제19조 제1항의 업무
2. 농림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장기저리의 자금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 별표 제1 제8호의 하란의 아목, 타목 또는 너목에 제기하는 자금대부 업무 또는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 제19조 제1항의 업무
3. 장기 자금(전호에 제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 별표 제1 제14호의 하란에 제기하는 자금대부 업무 또는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 제19조 제1항의 업무